

◎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상규정

제정 2007. 10. 29.
개정 2010. 1. 21.
개정 2013. 1. 16.
개정 2016. 3. 18.
개정 2017. 4. 11.

제 1 조(목적) 본 도 대표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본 규정에 의하여 시상금을 지급한다.

제 2 조(시상범위) 본 도 대표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지도자로 한다.

제 3 조(시상금지급)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상 입상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5개 시·도 이하가 출전하여 획득한 메달 시상금은 시상기준의 50%만 지급한다. <삭제 2010. 1. 21.>

제 4 조(시상시기) 시상은 당해 연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(시상금 지급기준) 시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① 단체경기 시상금금은 참가신청서 인원에 의한다.

② 경기단체 성취상 및 입상지도자 시상금은 2008년 대회부터 적용한다.

③ 본 회 예산 사정에 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2010. 1. 21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3. 1. 16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6. 3. 18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 4. 11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 <개정 2010. 1. 21, 2013. 1. 16, 2016. 3. 18, 2017. 4. 11.>

시상금지급기준표

(단위 : 천원)

기 준		1위	2위	3위
가. 입상 선수	[선수부] 개인, 단체 (개인별)	1,000	500	300
	[동호인부] 개인, 단체 (개인별)	600	300	200
나. 입상 지도자		1,000	700	500
다. 세계신기록 입상자		1,000		
라. 한국신기록 입상자		200		
마. 대회신기록 입상자		100		
바. 경기단체 성취상 (단, 8개 시도 이상 참가종목)		- 종목별 1위 : 3,000 - 종목별 2위 : 2,000 - 종목별 3위 : 1,500		